

제공일자	2014. 11. 28(금)	담당자	최창희 연구위원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02-3775-9115)	연락처	02-3775-9040
			총3매

제목 :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최창희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주장
-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발생 빈도는 낮으나 사고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기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와 기업 재정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

□ 보험연구원은 12월 1일(월) 박대동 의원, 금융법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 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 하였음.

- 이번 토론회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에 앞서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음(개정안 내용은 별첨 참조).
-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제도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법학적 분석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을 발표하였음.

- 이후 정경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손병두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박병호 정책관(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오남석 국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조남희 대표(금융소비자원)는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음.

정보유출 위험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미국에서는 매년 500건 내외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의한 정보유출 건수는 최대 2억 건에 이름.
-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매카피(McAfee)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이버 범죄에 의한 손해액은 300조 원에서 1,000조 원 규모로 대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5배 규모인 것으로 추산됨.
- 최근 국내에서도 유출 건수가 최대 1억 건이 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유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GDP의 0.00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GDP의 0.00031%인 43억 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미미한 실적은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정보유출 사고 위험을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정보유출 사고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다각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함.
-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 빈도가 낮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것이 어려움.

- 타 위협의 경우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끊임없이 새로운 해킹 기법 또는 사기 유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최신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적용이 필수적임.
- 동 업종 내의 기업 간에도 정보유출에 노출된 위험 수준이 달라 각 기업의 정보유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정보 전산화의 가속화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유출 위협의 특징을 고려할 때 외국과 같이 위험관리 경험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기업에 맞춤형 정보유출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본 제도개선은 정보유출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임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또한 본 제도개선에 의한 관련 시장의 활성화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담보를 포함하는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기업에 정보유출 관리 컨설팅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붙임 : 1. 주제 발표 자료 각 1부
2. 법률 개정안 자료 3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